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출발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4. 16.(일) 12:00 (2023. 4. 17.(월) 조간)

‘킹크랩 사와’, 신고했다고 부당 지시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엄정 조치

- 특별근로감독 결과, 괴롭힘 및 불리한 처우 확인... 총 15건 노동법 위반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, **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**한 결과(1.27. 보도참고자료 참조), **고인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고, 이를 포함하여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**했다고 밝혔다.

’22년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**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**이 있었으며, 고인이 **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**에는 **고인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**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**불리한 처우**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.

또한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**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**하고, 조사과정에서 **알게 된 비밀을 누설**하는 등 **편향적인 조사**를 통해 **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**내렸다. 이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.

그밖에도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**4억원이 넘는 “공짜 노동”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**하였다.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**형사입건 6건, 과태료 총 6천 7백만 원 부과 등의 법적조치를 하였으며,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**

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. 아울러, **공인노무사법상** 성실·비밀엄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해당 **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**할 계획이다.

이정식 장관은 "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**편향적으로 조사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.**"라면서, "현재 진행 중인 **농협·수협에 대한 기획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릴 것**"을 지시했다.

또한 "정부는 **성공적인 노동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가능**한 만큼 **노·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여** 청년 등 취약계층의 **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.**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초경 (044-202-7553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최충운 (044-202-7528) 강숭훈 (044-202-7531)
담당 부서	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	책임자	과 장	김승배 (063-240-3388)
		담당자	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	이재훈 (063-240-3373) 김민영 (063-240-344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장수농협 특별감독 결과

연번	위반법조	위반내용	조치
1	직장 내 괴롭힘 (근기법 제76조의2)	•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* 고인의 주말 근무 대체 요청에 응하는 대신 275,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요구, 수취 등	과태료 8,000,000원
2	불리한 처우 (근기법 제76조의3⑥)	•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* 괴롭힘 신고 이후에는 고인을 타 부서로 발령하고도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도 않은 PC 자리를 배정하고 직무 미부여 * 이미 반품요청 건이 처리되어 처리할 내용이 없음에도, '반품되지 않은 물량을 처리'하라는 등의 서면 업무명령을 시달하고 변명적 사유 작성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	형사입건 (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
3	비밀누설 (근기법 제76조의3⑦)	• 조사과정에서 비밀누설	과태료 9,000,000원
4	임금체불 (근기법 제36조, 46조)	• 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396,748,620원 • 연장·휴일근로 가산수당 40,492,730원 • 연차미사용수당 21,087,070원	형사입건 (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
5	연장근로 제한 (근기법 제53조)	•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(293건) * (참고) 주로 농번기, 수매철 등에 연장근로가 집중	형사입건 (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)
6	임금명세서 (근기법 제48조)	•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명세서 미교부 (8명, 27회(개월) × 300,000원)	과태료 8,100,000원
7	산후 1년 미만 여성 미인가 휴일근로 (근기법 제70조)	• 산후 이후 1년 이내에 휴일근무(2건)	형사입건 (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)
8	정기노사협의회 (근참법 제26조)	• 정기노사협의회 일부 미개최(5건)	형사입건 (2백만원 이하 벌금)
9	고충처리위원 (근참법 제26조)	• 고충처리위원 미선임	형사입건 (2백만원 이하 벌금)
10	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(기간제법 제17조)	• 일부 비정규직 직원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일부사항 누락(23건)	과태료 37,000,000원
11	근로자명부 (근기법 제41조)	• 일부 비정규직 직원 근로자명부 미작성	과태료 300,000원
12	임금대장 (근기법 제48조)	•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대장 미작성	과태료 300,000원
13	취업규칙 (근기법 제93조)	•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	과태료 400,000원
14	임금·단체협약 (노조법 제31조)	• '20년~'22년 임단협 미신고(3건)	과태료 4,600,000원

* 공인노무사법 위반사항 포함 총 15건

(참고)특별근로감독 실시 개요

- (배경) 불법.부조리 엄정 대응,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예외없는 특별감독 원칙
- (일시) '23.1.27.~4.7.
- (방식)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특별근로감독팀 구성·실시
- (내용) 감독 실시일 기준 3년간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사항을 점검,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, 불리한 처우 등 중점